

## 감리지적사례 FSS/2008-33 :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전환상환우선주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6.06.30.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이다.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공장 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58억원을 단기 대여하였고, 빈번한 거래로 매출채권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13년 및 ’14년 단기 대여금을, ’15년에는 매출채권을 대체하여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는 출자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는 ‘13년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B사가 회사의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B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증자 요구가 계속됨에 따른 결정이었다.

회사는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전환상환우선주를 ’13년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80억원)으로, ’14년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154억 원)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2015년 회계연도에는 감사인 감리팀이 통보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2013년, 2014년도의 회계처리를 정정했다. 회사는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처리를 위해 한국자산평가(이하, ‘평가사’)에 전환상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각 회계연도 말 1주당 공정가치를 제시 받았고, 2013년 만기보유금융자산(80억 원) 계정을 내재파생상품(68억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12억원)으로 재분류하였고, 2014년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154억원)을 내재파생상품(114억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40억원)으로 계정 재분류 하였다

### 전환상환우선주 대체취득 현황

취득일자	발행금액	주당발행가액	발행주식수	비고
2013.12.24.	8,000,000,000	40,000	200,000주	B 대여금 대체
2014.12.19.	7,800,000,000	40,000	195,000주	
2015.10.02.	2,000,000,000	40,000	50,000주	주식매수의무 이행
2015.12.17.	5,600,000,000	35,000	160,000주	B 매출채권 대체
합계	23,400,000,000		605,000주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비상장 종속기업인 B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관련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 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재파생상품을 주 계약과 분리하여 회계 처리한다. 내재파생상품이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기간 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 상품의 공정가치와 주 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 12를 적용하여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전환상환우선주는 내재파생상품(상환권, 전환권)과 주계약(우선주)으로 구성된 ‘복합상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주 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별도의 파생상품인 것처럼 주 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주계약이 비상장주식인 이유 등으로 내재파생상품과 주 계약을 신뢰성 있게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경영진 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하고,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며,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회사 감사인은 종속기업인 B사 관련 계정인 대여금 및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리스크가 높은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하였고, 회사가 취득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복합 상품의 계정과목 분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또 평가관행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신뢰하고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 **5. 시사점**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감사인은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하고,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며,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